



충북대학교병원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임상교수요원 (임상교수) 채용 공고

「인류 건강과 의학 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의료의 새로운 중심」 충북대학교병원과 함께할 임상교수요원(임상교수)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12월 17일

충북대학교병원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진료과	세부전공	인원 (명)	비고
1	심장내과	부정맥	1명	
2	심장내과	심장영상	1명	
3	신장내과	-	1명	
4	안과	녹내장	1명	
5	재활의학과	소아재활	1명	
6	류마티스내과	-	1명	
7	신경과	말초신경 및 근육질환	1명	
8	방사선종양학과	-	1명	
9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	1명	
10	내분비내과	-	1명	
11	중환자진료센터	-	1명	

응시자격

- 해당분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전임의사(임상강사) 과정 이수를 포함하여 전문의 경력 2년 이상인 자 (군경력 제외, 병역 만료 당해 연도에 전임의사 경력이 있는 경우는 1년 10개월)
- 연구실적은 지원 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4년 이내 (최종학위논문은 연수제한 없음, 군복무기간은 불포함)에 발표된 200점이상 600점이하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실적물의 범위는 학위논문, 국제등재학술지(A&HCI, SSCI, SCIE), SCOPUS, ESCI,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로 함.
([붙임1] 및 [붙임2] 참조)

※ 상기 자격이외에 본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2

전형절차



3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5. 12.17.(수) ~ 12.31.(수) 16:00까지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https://cbnuh.recruiter.co.kr/>)

4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전형일정
① 서류전형 (자격심사, 전공적격심사, 연구실적심사)	2026년 1월 중
② 면접심사	2026년 1월 16일
③ 합격자결정 및 발표	2026년 2월 중
④ 임용예정일	2026년 3월 1일 (예정)
* 전형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본원사정 또는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5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산

6

기타사항

- 응시지원자는 지원직종,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바람.
-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단계별 전형에 불참할 시 불합격 처리 함.
- 응시원서 내 연구실적물은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하시기 바람. ([붙임2] 참조)
- 제출서류는 응시자격조회 및 신원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 전공적격심사를 위한 학력사항을 수집함.
- 최종 합격자 통보 후에도 성·아동학대·노인학대·장애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진료행정실(043-269-6102)로 문의바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 진료행정실 ☎ (043) 269 - 6102
 홈페이지 : www.cbnuh.or.kr, e-mail : jinhaeng@cbnuh.or.kr

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 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3.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타법령 (의료법 제65조 및 66조)

의료법 제65조 (면허 취소와 재교부),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응시원서 등 1부.(본원 소정 양식)
- 심사논문 및 논문 증빙자료 1부. ([붙임2] 참조)
- 취업보호대상자 및 장애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졸업증명서(학사), 학위증명서(석사,박사),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각 1부.
 - 수련증명서(인턴, 레지던트) 각 1부.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인턴, 레지던트 제외 모든 경력) 각 1부.
 - 의사면허,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해당자에 한함)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또는 병적확인서(남성 지원자에 한함) 1부.
- ※ 각종 증명서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 제시
※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번역문 첨부